

2021년 9월 3일(금)

18:00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9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최민경 정책부팀장 (070-4760-0930) 신주운 정책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어려워

- 시·도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대부분의 경찰 수사는 중지된 상태
- 급증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 전시 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한 심각한 동물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발한 가운데, 엄중한 처벌과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시민들이 동의를 보내주었다. 이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오늘(9월 3일) ‘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문제의 겔러리는 폐쇄되었으며,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 관계자에 따르면 “카라가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고발 접수하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미 수사는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개인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의 경우에도 이미 해당사건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으며, 오히려 신고자들은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캐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의 답변이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경찰에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대답했다. 카라의 최민경 부팀장은 이와 관련하여 “동물학대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선 경찰들은 정작 새로 개정된 매뉴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사체 부검 처리 과정 등을 경찰에게 일일이 설명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기준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아이피 추적 등 수사 과정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진행이 미진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플랫폼 서비스 운영회사의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도 않는다. 결국 국민청원 해당 사건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잘 아는 이용자들은 “경찰들도 귀찮아서 불송

치로 종결낼 것" 이라고 스스로 수사 방향까지 추론하며 국민청원 달성 이후에도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란 듯이 동물 학대 게시물을 전시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줄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와대 답변은 지난 2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괄목할 만한 정부의 결단을 보여주기는 커녕 일반적인 정부 대응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변화를 기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동안의 동물 학대 관련 온라인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과정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비인도적 잔혹사건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자료조사 결과나 구체적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전시되는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은 아동 및 청소년도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든지 시청하거나 재유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발생한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이용자의 경우 다수가 미성년자였음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최민경 부팀장은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국민 정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생명경시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 수사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끝)

사진자료

(1) 국민청원 참여 화면

— 답변완료 —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250,559명]









청원동참

“경찰들도 귀찮아서 송치하지 않을 것”

전체 댓글 [2] ↻

본문 보기 | 등록순 ▾

○○ (210.100) ⊗

ㄹ○ 진짜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로 어찌어찌 특정해서 경찰서 출두를 시켰더라도, '학대한적 없고, 글은 그냥 관심받으려 썼다. 주워온 새끼고양이가 알수없는 이유로 죽어서 찍은 사진들이다/인터넷 모처에서 주운 사진들이다. 어디서였는지는 기억안남'으로 일관하면 경찰들도 귀찮아서 불송치로 종결냄.

07.05 00:55

L ○○ (223.62) ⊗

애초에 출두시키기도 전에 경찰에서 짜를듯

KARA

07.05 01:21

(6) 국민청원 답변 - 1



(7) 국민청원 답변 - 2



동물권행동 카라

(8) 수사중지 통지서



서울마포경찰서

제 2021-02631 호

2021. 8. 26.

수신 : 동물권행동 카라(고발담당자: 귀하)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21. 7. 20.	사건번호	2021-007728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결정일	2021. 8. 26.		
결정종류	1. 송치 (선택) : 송치관서명(☎: 전화번호) 2. 이송 (선택) : 이송관서명(☎: 전화번호) 3. 수사중지 (○)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경제2팀 경감 전진우	계급 담당자	☎ 02 3149 6592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서울마포경찰서장